
VI. 맺음말

공제는 그동안 민영보험의 공급이 어려웠던 계층 또는 지역 등에 대해서 위험 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의 의의는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공제가 상호부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영리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는 순수한 의미에서 공제라고 하기 어려워진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그에 합당한 규제체계가 적용되지 않을 때 계약자 보호가 소홀해짐은 물론 불공정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부조의 순수한 역할을 벗어나게 되면 다양한 측면의 관계를 고려하여 규제체제도 바뀔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왜 일반공제가 보험규제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공제는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규제 및 감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규제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규제체계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려할 수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정책적 고려사항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안을 평가하자면 「상법」과 「보험업법」 체계 내에 공제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규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감독 및 검사 측면에서도 개별 부처에서 분산하여 행하는 것보다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 농협공제를 보험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농협법」이 개정되었다⁶⁴⁾. 이는 농협이 현재와 같이 공제로서는 더 이상 위험관리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관련하여 한계를 느끼는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를 위한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은 컸다. 이렇게 논란이 커진 데에는 단순히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농협개혁과 맞물려서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논의구조는 간단해지고 문제점을 협의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보험업계측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농협법」이 개정됨으로써 향후 5년간은 규제의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는 남겠으나,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규제가 동일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다른 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의 경험을 반영하여 「보험업법」에 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농협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이 선례가 되어 다른 공제의 보험회사 전환 시에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러한 규정 신설은 현재 존재하는 보험회사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공제에 대해 공제로서의 감독을 받는 경우 이외에도 보험회사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공제는 별도의 영역에 안주하기보다는 적절한 규제체계를 갖추고 보험회사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여 국민경제상 위험관리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계층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방향이 될 것이다.

64)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한다.